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특허청 인력 8명(5급 4명, 6급 3명, 9급 1명)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(5급 1명)을 감축하되,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·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호, 2015. 12. 0. 공포 및 시행)됨에 따라,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,

정보고객지원국의 정보활용팀을 폐지하고, 정보고객지원국의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며, 특허심사2국에 자원재생심사팀을 신설하여 담당하는 업무를 정하고, 부서별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산업재산정책국의 부서별 업무조정 (안 제8조제3항·제7항)

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공익과 사적 재산권의 비교형량·보상규모 결정 등 다방면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표준특허 창출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에서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재산정책과로 조정하여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

나. 정보고객지원국의 부서별 업무조정 및 부서의 명칭변경(안 제10

조)

정보고객지원국의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활용팀의 각종 정보활용관련 업무를 정보관리과로 통합하고, 정보관리과의 산업재산권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업무를 정보고객정책과의 업무로 하는 등 정보고객국의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,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라 정보개발과를 정보시스템과로 명칭 변경

다. 특허심사기획국의 부서별 업무조정(안 제12조제3항·제10항)

하나의 출원에 의해 여러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발생하는 PCT(특허협력조약 : Patent Cooperation Treaty)에 따른 국제조사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특허심사기획과의 국제조사 접수·발송 업무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의 업무로 조정

라. 특허심사2국에 자원재생심사팀 신설(안 제14조제2항·제11항)

증가하는 자원재생분야의 기술출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해 특허심사2국에 자원재생심사팀을 신설하고 자원재생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

마. 국정과제·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
특허청 인력 8명(5급 4명, 6급 3명, 9급 1명)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(5
급 1명)을 감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1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15. 12. . ~ 12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

제8조제7항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정보개발과, 정보관리과, 정보활용팀”을 “정보시스템과, 정보관리과”로, “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”을 “또는 기술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서비스기관(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외한다)”을 “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”으로 하고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21호 및 제2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운영

20.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·연구

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보개발과장”을 “정보시스템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

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6.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17.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5항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·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조정
2.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4.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5. 산업재산권 출원서류·등록서류 및 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

제10조제5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8호로 한다.

제10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운영 및 관리

제10조제5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

제10조제5항제9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한다.

제10조제5항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산업재산권 공보의 생성·발간 및 배포

12. 대민용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
2.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및 소관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

⑪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통신네트워크심사팀”을 “통신네트워크심사팀, 자원재생심사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자원재생팀장은 자원재생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407”을 “1,39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405”를 “1,397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177”을 “176”으로 하고, 공업사무관 “121”을 “118”로 하며, 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약무주사·시설주사·전사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21”을 “18”로 하고, 공업주사·농업주사·임업주사·해양수산주사·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“20”을 삭제하며, 그 다음에 공업주사·농업주사·임업주사·해양수산주사·보건주사·약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“20”을 신설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39”를

“38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1,407”을 “1,39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405”를 “1,397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124”를 “123”으로 하고, 공업사무관 “106”을 “103”으로 하며, 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약무주사·시설주사·전사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47”을 “44”로 하고, 공업주사·농업주사·임업주사·해양수산주사·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“19”를 삭제하며, 그 다음에 공업주사·농업주사·임업주사·해양수산주사·보건주사·약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“19”를 신설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39”를 “38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146”을 “14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46”을 “145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11”을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146”을 “14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46”을 “145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기상사무관·항공사무관·임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수의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11”을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5 중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보건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1” 및 방호서기보 “1”을 삭제하고,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보건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·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“2”를 신설한다.

별표 6 중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보건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1” 및 방호서기보 “1”을 삭제하고,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보건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·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“2”를 신설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정보고객지원국의 정보활용팀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영되고 있는 특허심사2국의 자원재생심사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.

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대통령령 제 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(5급 5명, 6급 3명, 9급 1명)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산업재산정책국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1. (생략)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1. (생략)</p> <p>제10조(정보고객지원국) ① (생략)</p> <p>② 정보고객지원국에 정보고객정책과, <u>정보개발과, 정보관리과, 정보활용팀, 출원과, 등록과</u> 및 국제출원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</p>	<p>제8조(산업재산정책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정보고객지원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정보시스템과, 정보관리과</u>----- ----- ----- <u>또는 기술서기관</u>----- -----</p>

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약
무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
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
보한다.

③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
항을 분장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
산권 관련 정보서비스기관(지
역지식재산센터는 제외한다)
의 육성 및 지도

4. ~ 18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9. (생략)

20. (생략)

④ 정보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~ 14. (생략)

15.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구
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③ 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-

4. ~ 18. (현행과 같음)

19.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
관한 계획의 수립·운영

20.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
보호제도에 관한 조사·연구

21. (현행 제19호와 같음)

22. (현행 제20호와 같음)

④ 정보시스템과장-----
-----.

1. ~ 14. (현행과 같음)

15.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구축
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6.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
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
17.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구

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운영
2.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·연구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3. (생략)
4.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

6. (생략)
7. (생략)
8. (생략)

<신 설>

축·운영에 관한 사항

⑤ -----
-----.

1.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·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조정
2.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3.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운영 및 관리
6. 산업재산권 공보의 생성·발간 및 배포
7.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
8. (현행 제3호와 같음)
4.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5. 산업재산권 출원서류·등록서류 및 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
9. (현행 제6호와 같음)
10. (현행 제7호와 같음)
11. (현행 제8호와 같음)
12. 대민용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9. (생략)

⑥ 정보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·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조정
2.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3.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운영 및 관리
4.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5. 산업재산권 출원서류·등록서류 및 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
6. 산업재산권 공보의 생성·발간 및 배포
7.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
8.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⑦ ~ ⑨ (생략)

제12조(특허심사기획국) ①·② (생략)

13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<삭제>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특허심사기획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국제출원에 따른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

8. (생략)

④ ~ ⑨ (생략)

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<신설>

제14조(특허심사2국) ① (생략)

② 특허심사2국에 가공시스템심사과, 정밀부품심사과, 반도체심사과, 자동차심사과, 고분

③ 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8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

2.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및 소관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

⑪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제14조(특허심사2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자검유심사과, 컴퓨터시스템심사과, 약품화학심사과, 통신네트워크심사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·공업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⑩ (생략)

<신 설>

----- 통신네트워크심사팀, 자원재생심사팀-----

③ ~ ⑩ (현행과 같음)

⑪ 자원재생심사팀장은 자원재생분야의 특허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특허청 공무원 정원표(제19조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1,407	<u>1,399</u>	-8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1,405	<u>1,397</u>	-8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	177	<u>176</u>	-1
·	·	·	
·	·	·	
공업사무관	121	<u>118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 ·농업주사·약무주사·시설 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 신주사	21	<u>18</u>	-3
·	·	·	
·	·	·	
<u>공업주사·농업주사·임업주사</u> <u>·해양수산주사·보건주사</u> <u>또는 약무주사</u>	<u>20</u>	<u><삭제></u>	-20

<u>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임업주사</u> <u>· 해양수산주사 · 보건주사 ·</u> <u>약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</u> · · 사무운영서기보 · ·	<u><신설></u> · · 39 · ·	<u>20</u> · · <u>38</u> · ·	+20 -1
---	---	--	-------------------

[별표 2]

특허청 공무원 정원표(제19조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1,407	<u>1,399</u>	-8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1,405	<u>1,397</u>	-8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	124	<u>123</u>	-1
·	·	·	
·	·	·	
공업사무관	106	<u>103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 ·농업주사·약무주사·시설 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 신주사	47	<u>44</u>	-3
·	·	·	
·	·	·	
<u>공업주사·농업주사·임업주사</u> <u>·해양수산주사·보건주사</u> <u>또는 약무주사</u>	<u>19</u>	<u><삭제></u>	-19

<u>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임업주사</u> <u>· 해양수산주사 · 보건주사 ·</u> <u>약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</u> · · 사무운영서기보 · ·	<u><신설></u> · · 39 · ·	<u>19</u> · · <u>38</u> · ·	+19 -1
---	---	--	---------------

[별표 3]

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146	<u>145</u>	-1
일반직 계	146	<u>145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 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 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	11	<u>10</u>	-1
·			
·			

[별표 4]

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146	<u>145</u>	-1
일반직 계	146	<u>145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 사무관·농업사무관·기상사 무관·항공사무관·임업사무 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 무관·약무사무관·의료기술 사무관·수의사무관·환경사 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11	<u>10</u>	-1
·			
·			

[별표 5]

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2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보건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</u>	<u>1</u>	<u><삭제></u>	-1
<u>방호서기보</u>	<u>1</u>	<u><삭제></u>	-1
<u>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보건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·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</u>	<u><신설></u>	<u>2</u>	+2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6]

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2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보건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</u>	<u>1</u>	<u><삭제></u>	-1
<u>방호서기보</u>	<u>1</u>	<u><삭제></u>	-1
<u>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보건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·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</u>	<u><신설></u>	<u>2</u>	+2
·	·	·	
·	·	·	